

부산직할시남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1. 심사 경과

- 가. 제안일자및제안자 : 1993년 2월 10일 남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1993년 2월 10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제19회 임시회 제1차위원회(1993년2월22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기획감사실장 정 석 조)

가. 제안 이유

- 0. 지방공무원임용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13786호, 92.12.26)시행으로 기술직 공무원의 직급명칭을 행정직공무원의 직명체제와 같게 시행

나. 주요 골자

0. 보건소장의 직명 변경

지방의무기정 또는 지방보건기정 →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

다. 참고 사항

0. 지방공무원임용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3786호)

제5조(직렬조정 및 직급명칭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3. 전문위원 검토 보고의 요지

기술직 공무원과 행정직 공무원의 직명 체계가 일치되지 않아 대외적으로 혼돈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92.12.26 대통령령 13786호에 의거 지방 공무원 임용령중 개정령 시행으로 기술직 공무원의 직급 명칭을 행정직 공무원의 직명 체계와 같이 하는 것으로 당구 보건소장의 직명을 지방 의무 기정 또는 지방 보건 기정에서 지방 의무 서기관 또는 지방 보건 서기관으로 직명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안은 적법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

5. 토론 요지

“ 없음 ”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소수 의견의 요지

“ 없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